

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「주택법」 제20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인수시,
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
임대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 및
잔금1차 지급 시기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여
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사업장의 사업여건 개선 및
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
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
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임대주택 인수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
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,
임시사용승인 시에도 잔금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
명시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